

기안용지

분류서	기호	도제415~112 (전화번호)	전결규정	정결조사	합함
처리기간	제2부시장				
시행일자	10/14				
보존년한	결재 1975.10.15 제2부시장				
보조기관	도시계획국장	협 반무담당관 (고지안임사) 종합계획계장 가로계획계장			조
	도시계획과장				
	지역계획계장				
기안책임자	권완	75.10.2	김정길		
경수찰	유신조	각안참조	발신	통	검 1975.10.15
제목	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변경				
제1안 내부결재					
<p>1. 건설부고시제 198호 (기.4.7) 에 의거 서울특별시고시 제198호 (자.8.26) 로 지적승인된 도심부 상업지역종 퇴제로 부근 상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지적고시 시행요령 개정 방침을 득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호 (자.4.26) 로 변경 표시후 건설부 장관에게 보고 하였던 바</p> <p>2. 본건 도시 415~18091호 (75.9.16) 로 본 지역은 이미 지적 고시가 완료된 지구로 현행 규정상 지적고시 변경으로는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시정 조치하라는 건설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건설부고시제 123호 (73.4.4) 제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고시 조치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고시제 161호</p> <p>가. 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 승인 조서</p>					

용도지역구분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기 점	변 경	변경후	
상업 지역	중구 퇴계로 일부 지역	6,282,600	8.552	6,274,048	

도면 표시와 같음 (별첨)

첨 부 변경 지적 고시 도면 (1:10,000) 10.11 제 163 호	제 2 안 고시안	심 사 자	법 구 조 번호
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		부	제 163 호
도시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 승인			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 호 (75. 4. 26) 로 지적 고시한 바 있는 상업 지역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 4. 4) 규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 고시 한다.

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와 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에 각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.

가. 도시 계획 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 승인 조서

용도지역구분	위 치	면 적 (m ²)			비 고
		기 점	변 경	변경후	
상업 지역	중구 퇴계로 일부 지역	6,282,600	8.552	6,274,048	

도면 생략 (별첨)

* 도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와 관할 구청 시민 봉사실에 보관함

제 3 안

수 신 건설부 장관 발신 시장
제 목 동 권

1. 도시 415~18091호 (75. 9. 16) 에 관련 합니다.
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 호 (75. 4. 26) 로 지적 고시한 바 있는 당시 중구 퇴계로 일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 호 (73. 4. 4) 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

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일부 변경 지적 고시하였기 보고합니다.

첨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4 안

수 신 중구청장

발신 시장

제 목 등 건

1. 도제 415~406호 (75. 4. 26)에 관련입니다.

2. 서울특별시 고시 제 58호 (75. 4. 26)로 지적 고시한 바 있는 중구 퇴계로 일부 상업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조 및 건설부 고시 제 123호 (73. 4. 4)의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 및 도면 표시와 같이 일부 변경 지적 고시하였기 홍보하니 관계 도시를 귀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일 것이며 본 지역 관리와 민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

첨 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1부

제 5 안

수 신 총무처 장관 (문화공보실장)

발신 시장 (과장)

제 목 관(시)보 게재 의뢰

다음과 같이 관(시)보 게재를 의뢰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 관(시)보 게재 구분 : 고시

나. 관(시)보 게재 건명 : 도시계획용도지역 일부 변경 지적승인

다. 법적 근거: 도시계획법 제 13조

첨 부 고시문 사본 2부 (1부) 끝